

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신청공고

서울특별시 및 중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구역 안에서 지하매설물(전기, 전화, 상·하수도, 도시가스 등)의 신설·개축·변경 또는 제거를 위하여 2016년도 상반기에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『도로법 시행령』 제56조 및 『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5년 12월 일

중 구 청 장

1. 신청대상 : 서울특별시 및 중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공사
2. 신청기간 : 공고한 날부터 30일간
3. 구비서류 :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·복구업무 처리규칙 제5조(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)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 첨부
 - 설계도면(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)
 - 교통소통대책, 먼지발생방지대책, 안전사고방지대책, 도로시설유지대책
 -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(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)
 -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(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)
 - 도로굴착장기사업계획('16년~'20년)
4. 접수처 : 중구청(도로시설과 도로굴착팀 ☎ 3396-6123~4)
5. 신청요령
 - 가. 건물신축 등에 따른 전기, 전화, 상·하수도, 도시가스 등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.
 - 나. 도로굴착 사업계획의 조정 후 조정된 내용에 따라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도로 소재지 관할구청장(중구)의 도로점용(굴착·복구)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 - 다. 도로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 - 라. 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능 하며, 다만,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사항은 2016년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쳐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.
6. 기타 본 공고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도로시설과 도로굴착팀 (☎ 3396-6123~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